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. 1. 18 선고 2022가단122921 판결 [매매대금 등 반환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욱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3. 1. 1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49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5. 30.부터 2022. 10. 15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이범용

별지